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9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7년 9월 29일

3. 제안이유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 채용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반영하고,
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개정('17.1.6)에 따라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신설하여 수의직렬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역학조사관(의사)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 신설(제2조의2)
 - 대 상 : 의무직(임기제 포함) 공무원으로서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
 - 수당액 : 전문의 월 909,000원 / 일반의 월 818,000원

○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(장려수당) 지급기준 신설(제2조의3)

- 대 상 :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·위촉된
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
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

- 수당액 : 월 270,000원

5. 검토의견

○ 금번 개정조례안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